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수신자 : 대한의사협회장
(경유)
제 목 :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」일부 개정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-156호(2026.8.29.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」관련입니다.

3. 위와 관련, **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」**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-198호, 2026.9.14.)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http://www.hira.or.kr)* 및 요양기관업무포털(http://biz.hira.or.kr)**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 * (경로) 기관소식-HIRA소식-공지사항
 ** (경로) 자동차보험-알림방-자동차보험 알림방

붙임 1.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_주요개정내용
2.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_일부개정. 끝.

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

결재	담당 백시내	팀장 정다운	부장 김우주	센터장직무대리	전결09/14 김미성

협조

시행 자보기준관리부-2884 (2026.09.14.) 접수
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/ www.hira.or.kr
전화 033-739-3412 전송 033-811-7343 /sinae85@hira.or.kr / 공개